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4가단51722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8. 27.

판결 선고2024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2,232,004원 및 그 중 88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 4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, 9,444,445원에 대하여는 2024. 4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.5%, 1,217,295원에 대하여는 2024. 4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.6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은 취하하였다)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신정민

별지